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2015/16**

**세계 인권 현황**



**AMNESTY  
INTERNATIONAL**



#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50개국 700만명 이상의 지지자, 회원, 활동가로 구성되어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대표전화 02-730-4755  
© Amnesty International 2016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본 문서의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로 허용됩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deed.ko>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2015/16**

세계 인권 현황



# 사무총장 서문

**“과거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이 발생하는 무수한 위기를 보고 있노라면 분쟁을 막기는커녕 이를 종식하기 위한 역량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 결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처벌받지 않는 관행만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최고대표

지난 한 해 국제사회는 대규모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과 그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는 제도적 역량에 대해 혹독한 시험을 받아야 했으며, 그 결과 한심하리만치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고 있다.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이 그 원인 중 하나이며 현재 국민의 반 이상이 시리아를 빠져나가 난민이 되거나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 지금까지 시리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제적, 지역적 분열만을 일으킨 채 무산되었다.

유엔 지역난민·복원력 계획(UN Regional Refugee and Resilience Plan)을 포함하여 폭증하는 난민 사태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다자간 계획은 최근 수개월 동안 난민 위기의 크나큰 부담에 짓눌려 왔던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터키 간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했다. 시리아의 세 살배기 알란 쿠르디(Alan Kurdi)의 익사체를 담은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된 이후 난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유럽과 캐나다, 미국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위기를 끝내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질타와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리아의 이웃 국가와 서구 국가 모두 분쟁과 위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있어 국가별로 심각한 격차를 보였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상당한 수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 대부분은 여전히 난민 수용 폭을 의미 있는 수준까지 증가시키기를 꺼리고 있다. 난민 수용의 부담과 책임 분담은 일부 국가에만 엄청나게 편중되고 있으며, 급속히 확산되는 난민 위기에 비해 공급되는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는 동안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범죄자화, 강제송환, 입국 거부, 해외 추방, 비호신청 거부에 해당하는 다양한 국가행위 등으로 인해 수많은 이주민과 그들의 가족들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세계가 엄청난 수의 시리아 난민에 대응하고자 분투하는 동안, 시리아 내전은 더욱 격화되어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단체들이 수년 간 지속적으로 시급한 해결을 촉구해 왔던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한 우려사항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이제 시리아 내전은 수많은 민간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넓게는 국제법을 집행하지 못한 국제기구의 전형적인 제도적 실패 사례가 됐다.

지금의 노력이 언젠가 시리아에 평화를 가져오리란 희망이 있지만, 한편으로 수년간 내전이 계속되는 중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막고,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책임성에 공백이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로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에서의 국제법 위반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리아의 참담한 인권상황은 무력분쟁 중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취약점을 보여준 것이었다. 시리아 사태는 물론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IS)’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수십 년에 걸친 무분별한 무기거래로 인한 결과와 그로 인해 민간인들에게 끼친 끔찍한 영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결단 있는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국경 수비”나 “이주민 관리”를 운운하며 난민 보호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모습도 드러났다.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난민, 이주민, 국내실향민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시리아 내전이 가장 대표적일 수는 있으나 그 역시 수많은 분쟁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예멘 등의 국가에서는 무력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장단체 ISIS는 국경을 넘나들며 민간인의 생명을 처참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때문에 수천여 명이 피난을 떠나야만 했다. 아프리카의 브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북동부, 소말리아, 남수단 등지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모두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하면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인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지역, 다른 국가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우크라이나에서는 무력분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위반하며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수십 년간 지속됐던 콜롬비아 내전에 환영할 만한 진전(비록 정치적 협상에 밀려 책임자 처벌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더라도)이 있었던 한편,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인권을 훼손하고 시민단체를 해치려는 폭력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쟁이라는 재앙으로부터 후세를 구하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국제연합(UN)의 설립이 7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때 인권상황이 최악의 수준으로까지 치달은 것은 과연 ‘인권 보호라는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기에 국제법과 관행 제도만으로 충분한가?’라는 단순하고도 냉엄한 과제를 남겼다.

1977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총회 개최를 환영하며, 이를 “국제앰네스티가 다루는 인권 사안과 관련해 중요한 영역에서 유엔이 보인 다수의 진전”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고문반대 캠페인과 같은 영역에서의 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후로도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제도의 확립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결점이 오늘날처럼 명백히 두드러진 적은 없었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인권에 대한 다양한 위협 중에서도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주제에 더욱 힘을 실었다. 2015년의 명백한 첫 번째 주제는, 국제체제가 험난한 역경과 장벽 앞에 굳건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체제 자체에 대한 보호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2015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체계에 대해서도 수많은 위협이 존재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지역의 인권 보호와 책무성은 내부에서부터 위협받았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정부들은 여전히 국내적,

지역적 사법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아프리카의 지역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근 마련된 제도들은 보편인권에 대한 비전을 충분히 증진하지 못했다. 아시아의 제도는 여전히 미숙하고 비효과적이다. 한편 유럽의 제도는 일부 국가로부터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과, 아직까지 정의와 책무성이 구현되지 못한 밀린 과제로 위기에 처한 상태다.

유엔난민협약, 유엔고문방지협약 등 다자간 보호 조치와 해상 난민 보호 등을 위한 특수 제도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거나 억제하지 못했음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할 수도 없었고, 잔혹행위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 말리의 바마코, 나이지리아의 올라, 튀니지의 튀니스와 프랑스 파리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이 이루어졌던 것 역시 국제인권법이 이러한 비국가 활동 세력, 특히 폭력적인 무장단체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체제의 보호를 위해 다시금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체제가 제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과, 국제인권법을 다룬 모든 문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규범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 국제인도법을 존중할 것, 인권제도를 공격하거나 지지를 철회하는 등 보호체제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 국제 체제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지역적 인권체제를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주요 주제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닥친 위기 중 다수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반대 세력을 잔혹하게 탄압하거나, 모든 사람이 기본권을 지니고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는 불변의 과업을 억압하는 것으로 인한 적개심과 분쟁이 그 원인이었다.

지난해 5월 난민과 이주민 수천 명이 식량이나 물도 없이 바다에 표류해야 했던 안다만(Andaman) 해의 참극이나, 라틴아메리카 및 지중해 지역에서 사람들의 토지권과 생계를 보호하고자 활동하던 인권옹호자들이 살해되고 강제실종된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반대세력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사람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회적 긴장 상태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국제적 보호체제의 범위를 한계 이상으로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벌어진 결과였다. 제도적 부실과 정부의 반대세력 억압 및 인권 보호 실패 간의 관계를 가장 명백히 보여준 예시가 바로 5년여 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을 뒤바꿔 놓았던 ‘아랍의 봄’이다.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대중 시위가 벌어진 지 5년이 지난 현재,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반대세력 탄압에 더욱 치밀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당황스러운 점은 이러한 정부의 억압이 이제는 그 잔혹함만큼이나 교묘해졌다는 점이다.

2011년에도 이집트의 “1.25 혁명”으로 보안군에 의해 300명 이상이 숨졌고, 예멘의 “피의 금요일”에는 시위대 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제는 광장에서 경찰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 더 이상 헤드라인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연례보고서에 세계 각지에서 반대자

들과 시위대를 대상으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무력 사용과 비사법적 처형, 강제실종에 대해 모두 기록했다. 5년 전 시리아의 텔 칼라크에서 제도적인 집단 검거와 고문이 이루어졌던 것은 중동 국가들이 반대세력과 민중 시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여주는 초기 징후였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고문은 계속해서 자행되었고, “향상된 심문 기술”이라는 궤변으로 정당화되곤 했다. “아랍의 봄” 이전부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잔혹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용됐던 방법이다. 억압은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몰디브에서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던 수백여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체포되어 수 일 또는 수 주 동안 구금되어야 했다. 인도의 기자와 예술인들은 자의적 체포와 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했고, 더 넓게는 해외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제재하는 법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동도 제한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지적하고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이 경찰에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정부의 억압은 거의 일상이 되었고, 지금까지 몇 번이고 국가 안보와 치안, 국가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핑계로 포장되어 왔다.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 고문과 부당대우, 사형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 반대자들을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국가에서 전체주의적 수준의 감시활동이 특히 인권옹호자들의 삶과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송을 통해 폭로하기도 했다. 오늘날 국가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높아지는 연결성에 뒤떨어지지 않게 새로운 억압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개발이 표현의 자유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옹호활동의 결과로, 유엔은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라는 새로운 특별 절차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수 개월 안으로 디지털 영역에서의 명확한 인권 보호 규범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의 반대자와 시위, 공개적인 비판에 대한 탄압은 5년 전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한 이래 더욱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개인과 단체의 결사와 집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라도 누구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주장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옹호자들의 활동과 공간을 보호하는 권리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권 체제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인권옹호자들의 계속되는 옹호와 조직, 반대, 활동의 결과로 2015년에도 일말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해 세 가지 예시를 들어 보자.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인권과 책무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5월 액션으로 케냐의 몸바사 항구 연결도로 건설 계획으로 인한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양심수 필립 카르마(Filip Karma)는 전 세계 지지자들이 65,000건의 탄원을 보낸 결과 마침내 석방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자비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향후 이러한 희망의 징조가 국가의 힘만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이 꼭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활동영역과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지난 11월 채택된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을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시행할 것과, 이를 지키지 않은 국가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결의안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순간 이후로 더 이상은 단 한 명의 인권옹호자나 그 가족도 국가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협에 처하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인권옹호자들이 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서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각국의 인권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기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지난 해 닥친 수많은 위기와 그로 인한 인류의 절망, 특히 지금도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난민 위기에 대해 한정된 페이지에 모두 담을 수는 없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인권 및 민간인 보호 제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에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생사의 문제인 것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 대한민국(남한)

대통령: 박근혜

국무총리: 황교안 (6월 정홍원에서 교체)

정부가 계속해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진에 불필요한 공권력을 행사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가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하급심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겪고 있었다.

## 배경

서른 여덟 명이 사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여론과 국제사회는 정부가 메르스에 준비가 부족했고,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시민사회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도 충분하지 않았다. 6월 연례적으로 열리는 퀴어퍼레이드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처음 집회 신고를 낼 당시 경찰은 2014년 성소수자들과 보수단체가 충돌했다며 퀴어퍼레이드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월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으로 백남기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금과 기소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넓혀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했다.

1월 대법원은 이석기 외 통합진보당 당원 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월 대법원 판결은 2014년 말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쳤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직후에 나왔다.

2014년 11월, 미국 시민권자 신은미와 한국 국적자 황선은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신은미는 1월에 강제출국 되었으며 황선은 2월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6월 보석 석방되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00명 이상이 현재 수감되어 있으며 감옥을 나와서도 범죄기록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몇 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세 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8월 다른 세 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개정된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 잠재적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의 침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 **결사의 자유**

5월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 결정에 대한 본 사건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되어 있다.

6월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역시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계속해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록을 지연시켰다. 서울노동청은 이주노조에 노조규약 변경을 요구했으며, 8월 이주노조가 규약을 변경한 이후에야 신고를 받아들였다.

### **집회시위의 자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들 중 다수는 청소년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는 시위가 있었으며, 대부분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다. 경찰은 4월 16일 서울 도심 광화문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1년을 추모하는 집회를 막았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진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공권력을 사용했다.

7월에는 인권옹호자 박래군과 김혜진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였다. 이 두 명은 416연대 운영위원이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었다. 경찰은 이들 집회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합법적으로 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 **이주노동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계속해서 강제노동을 포함한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다. 많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해고와 폭력 등 처벌의 위협을 받으며 초과 노동시간과 임금 미지급 등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노동조건에서 강제로 일했다. 고용허가제 아래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착취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받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 **사형제도**

7월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국회에 사형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사형폐지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일곱 번째 이지만, 전체 투표에 부쳐진 적은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내각 총리: 박봉주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거의 모든 인권을 침해, 박탈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재판 기회나 변호사 접견, 가족 면회도 허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인 역시 그 대상이 되었다. 일반 가정 중 특히 북한을 탈출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거나 외부 정보를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는 여전히 제도적인 감시를 받았다. 정부는 5만 명 이상에게 해외 일자리를 주선하고 이들의 급여를 고용주로부터 직접 거둬오므로써 세수의 상당 비율을 충당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수준의 착취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 배경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제 언론은 북한 고위관료들의 처형 소식을 계속해서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남북한 관계는 긴장상태가 계속됐다. 8월 초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여 한국 병사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국은 대북 방송을 통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같은 달 말에는 양측 간 포격전이 벌어졌다. 이러한 긴장은 43시간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해소되었다. 북한은 지뢰 폭발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북한은 국영매체를 통해 극심한 여름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최소 40명이 숨졌고 1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 표현의 자유

북한 정부는 국경에 관계 없이 정보를 탐색하거나 습득하고 전달할 권리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여전히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총 인구 2,500만 명 중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된 사람은 300만 명에 이르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의 국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인터넷 접속이 금지되고 있다.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만이 특수 심(SIM)카드를 구입해 스마트폰으로 해외에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 북한 내부 웹사이트나 이메일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인트라넷은 여전히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국경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국외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 통신망에 연결된 휴대폰을 밀반입해 이용했다. 이러한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은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중개인을 거쳐야 했다. 북한 외부에 전화를 거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중국 통신망에 연결된 밀반입 휴대폰을 이용하면 주변인 모두가 감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간첩 활동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체포와 구금을 당할 위험에 노출된다.

독립적인 신문사나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전혀 없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정보를 얻을 다양한 해외 소식에 대한 접근을 계속 제한했다. 라디오전파를 이용해 해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

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합법적인 수신기로는 해외 채널을 수신할 수 없도록 했다. 형법에 따라 “유해 방송 또는 적의 선전”으로 간주된 해외 시청각 자료를 소지하고 보거나 복제하고 유포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 사생활의 자유

밀반입한 휴대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던 북한 주민들은 대화 중 전파 방해가 일어나거나 대화가 도청되는 일이 빈번했고, 이외에도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기밀정보 및 디지털 작전 담당 특수부는 해외로 전화통화를 시도하려는 휴대폰 사용자를 감지하기 위해 수입산 첨단 감시 장비를 사용했다. 통화가 도청된 사람은 통화 상대가 한국에 있거나, 상대에게 송금을 요청했을 경우 체포될 수 있었다.

직접감시 제도 역시 여전히 사생활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북한 정부의 사상교육을 통해 감시를 목적으로 구성된 주민 조직은 불시에 집을 방문해 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각 조직의 대표는 국가안전보위부의 감시 담당 부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청 습관을 감시했다. 해외 시청각 자료를 보고 있거나 탈북한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것으로 의심된 가구는 더욱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탈북 주민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로 사람과 물품에 관한 국경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체포되는 건수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체포는 권리 행사에 대한 처벌이거나 민간 시장경제의 탄압, 또는 뇌물 갈취를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치범 수용소 등의 구금시설에는 여전히 수만 명이 구금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사람들은 고문과 부당대우, 강제노동 등 제도적으로 만연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대부분은 국제법상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국가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를 통해 구금되었다.

5월과 6월에는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3명이 국제 공정재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법 절차를 거쳐 간첩 행위 및 다수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지난 4월 북한에 불법입국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대학생 주원문은 변호사나 가족과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은 채 5개월 이상 억류되었다가 10월 석방되었다.

## 이주노동자 인권

북한 정부는 리비아, 몽골,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의약품, 건설, 임업, 조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파견했다. 이렇게 보내진 노동자들은 주로 과도한 업무 시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렸고 노동법 관련 정보가 차단되거나 근무 현황을 감독하는 정부기관과의 접촉도 금지되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로부터 상당액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파견국에서도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시를 받아야 했으며, 현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엄중히 제한되었다.

## 이동의 자유

한국 통일부는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주민들이 2015년 들어 10월까지 총 978명 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6월 15일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10대 병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언론은 북한 병사들이 한국으로 귀순하지 못하도록 북한군이 2015년 지뢰를 추가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도착한 북한주민 수는 2014년 1,397명이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3년과 2012년에도 이와 비슷했다. 최근 한층 강화된 국경 통제로 인해 예년에 비해 계속해서 낮은 수를 보이고 있다.

중국 등지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구금과 수감, 고문, 강제노동과 부당대우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중국은 국제법상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폴망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송환시키고 있는데, 1986년 북한 정부와의 합의 이후로 지속된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역시 비슷한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식량권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9월 발표를 통해 3년 연속 증가하던 식량생산량이 2014년부터 부진해졌으며, 2015년 가뭄으로 인해 쌀과 기타 곡물의 생산량이 10% 이상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인지 북한 정부는 7월과 8월부터 일일 식량 배급량을 1인당 410g에서 250g으로 줄였는데, 2013년과 2014년 같은 시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식량배급제도는 북한 총 인구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소 1,800만 명의 주요 식량공급원이다. 배급량이 줄어들면서 적절한 식량을 제공받아야 할 주민 대부분의 권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 국제적인 조사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그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관련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데 이어 2015년 6월 23일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이기도 했던 이번 사무소 개설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 기록하며 책무성을 높이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북한은 서울사무소 개설을 매우 격렬히 비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월 10일 북한 인권에 관해 재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유엔 기구들 역시 국제적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소한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데 그쳤다. 북한 정부는 8월 대표적인 27개 사례와 관련해 유엔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서한을 보냈으나, 실무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제공한 정보가 사건을 해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2015/16**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5/16**

**세계 인권 현황**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2015/16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160개국의 2015년 인권현황을 담고 있다.

다수의 지역에서 분쟁과 억압을 피하고자 수많은 난민이 피난을 떠났다. 고문 및 부당대우와 성과 재생산권리의 보호 실패가 주요 우려 사항이었다. 정부의 감시 활동과 불처벌 관행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힘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인권을 위해 나선 사람들을 기리고,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우려사항을 제시하며 행동을 촉구한다. 정책 입안자와 활동가 및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일독해 볼 내용이다.

**AMNESTY**  
**INTERNATIONAL**

